

2. 國土利用管理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512號 1992. 9. 1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취락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1가구당 기준면적을 1천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2조의7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2조의11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발촉진지역에 관한 국토이용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개발촉진지역의 용도지구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되어, 동지역의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토지이용 및 수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1. 개간촉진지구 : 별표 1의 토지능력구 분기준에 의한 1급지 내지 6급지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이용하거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련된 시설

의 용지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구

2. 택지개발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의 개발이 필요한 지구

3. 시설용지지구 : 토지의 기능과 적성으로 보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지로의 개발이 적합한 지구
가. 광물·석재 또는 토석의 채취
나. 공장등 산업시설의 입지
다. 가목 및 나목외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4. 집단묘지지구 : 묘지수급계획에 적합하고, 당해 지구의 90퍼센트이상인 임야로서 임상이나 토질등으로 보아 집단묘지로 개발함이 적합한 지구. 다만, 땅건설·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등 대단위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장되는 묘지등을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에는 묘지수급계획에 불구하고 입안할 수 있다.

제2조의14의 제목 “(국토이용계획확인)”

을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신청)”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중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하고, 동조제3항중 “국토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및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국토이용계획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토지이용계획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구획동(이하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그 용도지역등에 대한 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 300원
2.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 : 700원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확인 : 200원

⑤ 제4항의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5호 내지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석·기념탑·제사용 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5. 전기통신시설 또는 전기공급시설중 안테나·전주 및 철탑의 설치
 6. 기존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안에서의 가스·전기·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7. 기존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공사
 8. 경지지역 또는 산림보전지역안의 기존 주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이축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의 건축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 제5조제2항에 제5호 내지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비석 · 기념탑 · 제사용 건축물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6. 전기통신시설 또는 전기공급시설중 안테나 · 전주 및 철탑의 설치
7. 기존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안에서 가스 · 전기 · 열 · 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8. 기존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공사
9.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기존 주택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 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이축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별장 및 고급주택을 제

외한다)의 건축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 사무소 · 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등 당해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14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면)

신청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굵은 선안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항란은 아래의 1~7항목을 참조하여 표시하십시오.				처리기간	
1, 2, 3, 4 5, 6, 7						1 일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지		토 지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적(m ²)
		시 · 구 · 군	읍 · 면	리 · 동			
획 1 2	국 토 이 용	용 도 지 역	(도시 · 취락 · 경지 · 산림보전 · 공업 · 자연환경보전 · 관광 · 휴양 · 수산자원보전 · 개발촉진)지역				
		용 도 지 구					
		개발계획등의 수립여부					
		토 지 거 래	(규제 · 신고)구역	해당없음			
		용 도 지 역	(전용 · 일반 · 준)주거지역 (중심 · 일반 · 근린 · 유통)상업지역(전용 · 일반 · 준)공업지역(보전 · 생산 · 자연)녹지지역				
	도 시 계 획	용 도 지 구	풍치 · 주차장정비 · 미관(1, 2, 3, 4, 5종) · 아파트 · 고도(최저 · 최고) · 기타()				
		도 시 계 획 시 설	도로(저촉 · 접합) · 공원 · 기타()				
		도 시 개 발 사 업	토지구획정리 · 일단의(주택지 · 공업용지)조성 · 재개발 · 시가지조성				
		구 역	개발제한구역(내 · 저촉)			기타()	
		도 시 계 획 입 안 사 항					
3	군 사 시 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당없음		
4	농 지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해당없음		
5	산 립	보전임지			해당없음		
6	자 연 공 원	공원구역 · 공원보호구역			해당없음		
7	수 도	상수원보호구역			해당없음		
기 타							
귀하의 신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수 수료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input type="checkbox"/>	

〈참고〉

- 가. 이 확인원은 1필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사항입니다.
- 나. 부동산의 근본적인 재산가치에 영향이 미치는 각종 개별법상의 주요 제한사항을 망라하였으나, 전면 기재사항이 모든 법규를 수용한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 토지이용계획확인도면은 원칙적으로 생략하며,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확인도면만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라. 1의 국토이용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300원, 2의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700원, 3 내지 7의 사항에 관한 확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200원의 수입증지를 붙이시고, 둘 이상의 항목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사항의 각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에 해당되는 수입증지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확인도면〉

□ 개정이유 □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4호)되어 개발촉진지역의 9개 세분용도지구가 4개지구로 통·폐합됨에 따라 통·폐합된 용도지구의 입안기준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등 현행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취락지역·공업지역 및 개발촉진지역중 시설용지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농지 또는 초지가 전체면적의 50퍼센트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지 또는 초지의 포함여부에 관한 기준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령에서도 이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 규칙에서는 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른 입안기준만을 정하도록 하고 농지·초지편입기준은 각 개별법에서 당해 지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법 적용의 통일을 기함(제2조의4제2항 및 제2조의7제2항제3호).
- 나. 개발촉진지역의 공업용지구·채광지구·채석지구 및 채토지구가 시설용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설용지지구의 입안기준을 정함(제2조의11제2항).
- 다. 현재는 토지의 규제내용을 알기 위하여는 그 토지가 도시지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확인서를, 도시지역밖에 위치한 경우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각각 발급받아 용도제한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당해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보전임지·공원구역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별도의 확인절차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그 토지가 도시지역인지 도시지역밖의 지역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서식으로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군사시설보호구역·보전임지·공원구역등의 해당여부도 당해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모든 규제내용 및 현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제2조의14제1항).
- 라. 경지지역·산림보전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전주 또는 철탑의 설치, 기존의 도로구역 및 하천구역안에서의 전기·가스·열·상수도의 공급시설, 송유시설, 통신선로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존 하천구역안에서의 하천공사, 도로·하천공사등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일정규모이하의 기존 주택의 이축등은 행위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건설부 제공>